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 확대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 확대 등	3
가. 국가안보 중대한 위해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3
나. GATT 일반적 예외 규정 해당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7
다. 주요 교역상대국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발간 및 시정조치 협의 의무화 등	11
2. 부칙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사변·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 확대 등

가. 국가안보 중대한 위해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 외에도 “그 밖에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 ----- ----- ----- ----- ----- ----- -----.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u>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u>	1. ----- ----- ----- <u>전쟁·사변·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u>
2. ~ 5. (생략)	2. ~ 11. (생략)

헌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증진하되, 법령·조약상 필요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¹⁾,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거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 인간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물품등의 수출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이하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헌행법상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조사, 관계부처 및 교역상대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특별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 UN 총회 및 안보리 제재 결의(현행법 제5조제4호 사유)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로 이라크, 소말리아, 북한 등에 대한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위협, 시스템 마비·교란·조작 등을 통한 핵심 인프라 침해, 민수용으로 수출된 물자·기술의 전략적 전용 가능성 등 다변화·고도화된 방식으로 국가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1호는 전쟁·사변·천재지변이라는 전통적·물리적 안보위기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현대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그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조치사유로 포함하여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급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나. GATT 일반적 예외 규정 해당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GATT 일반적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공중도덕 보호,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제10호).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 ----- ----- ----- ----- ----- -----.
1. ~ 5. (생략)	1. ~ 5. (생략)
<u><신설></u>	<u>6.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품질·특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u>
	<u>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u>

현행	개정안
	<u>할 경우</u> <u>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u> <u>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u> <u>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u> <u>11. (생략)</u>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질소득 증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화의 생산·교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을 철폐하려는 상호적·호혜적 약정으로서, 1994년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WTO 체제가 출범된 이후로도 상품무역협정에 관한 부속협정서(Annex 1A)로 포함²⁾되어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GATT는 자유무역을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제20조에 따라 공중도덕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³⁾.

2) 참고로 GATT(1947)는 마라케시 의정서 양허표와 각종 해석 양해문과 함께 GATT(1994)로 재정리되고, GATT(1994)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서(Annex 1A)로 포함된 것

3) 그 외에 GATT는 제21조에 따라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를 둘 수 있도록 함.

[표 4] 1947년 GATT 국문 규정(제20조)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 (d) 통관의 시행, 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e)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 (f)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 (h)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그 자체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 (i) 정부의 안정화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다,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j)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단, 동 조치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1960년 6월 30일 이전에 이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자료: 외교부

이에 개정안은 공중도덕 보호 등 국제통상규범상 허용되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표 5] GATT 규정과 개정안 조문간 비교

GATT 규정	개정안 조문
(d) 통관의 시행, 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u>기만적 관행의 방지</u> 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u>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6.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u>제품의 원산지·품질·특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u> 및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e)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f)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리고 GATT에서 예외로 들 수 있도록 한 “기만적 관행 방지에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품의 원산지·품질·특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 산업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통상질서에는 통관, 반독점, 지식재산권 보호 외에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기업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 교역상대국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발간 및 시정조치 협의 의무화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협의하도록 의무화하며(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주요 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 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 ----- ----- ----- ----- -----.
1. (생 략)	1. (생 략)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u><신설></u>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신설></u> ④ ~ ⑦ (생략)	2. ~ 10. (생략) 11.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u>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 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호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우선, 현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시책 수립

을 위해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2026년 상반기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⁴⁾.

개정안 제7조제3항제1호는 이러한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매년 작성·발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호는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의무도 부여함.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에 따른 무역장벽을 주기적·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산업통상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3항 본문 외의 부분으로 각 호를 신설하여 보고서 작성·발간 및 시정조치 협의를 의무화하고자 하나, 신설된 각 호의 규정은 기존 제3항 본문의 체계 내에서 각 호의 사유·요건 등을 열거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각각 개별 조항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참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5조제3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대해 수출입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시정조치를 협의하더라도 상당 기간 성과 없이 통상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사유를 추가·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5조제11호는 시정조치 협의가 완료된 후 상대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산업통상부의 시정조치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지연되어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문언상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부칙

안 부칙은 동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표 7]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조속하게 취하여 국가안보 및 GATT에 따라 허용되는 각종 공익적 목적을 보호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는 수출입 제한 금지 조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 및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확대·신설하는 내용이므로 대통령령 정비기간 확보와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